

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														
[별표]														
주거용건축물의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(조례 제18조 관련) (단위 : 퍼센트)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용도별 구분</th><th>주 거 용</th><th>비 고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특례건축 물</td><td>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및 세대당 전용면 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 주택</td><td>복합건축 물은 비 주거용건 폐율(60 퍼센트) 적용 80</td></tr> <tr> <td>특례제한 건축물</td><td>연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 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및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 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인 공동주택</td><td>70</td></tr> <tr> <td></td><td>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단독주택 및 세대당 전용면 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공 동주택</td><td>60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	용도별 구분	주 거 용	비 고	특례건축 물	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및 세대당 전용면 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 주택	복합건축 물은 비 주거용건 폐율(60 퍼센트) 적용 80	특례제한 건축물	연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 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및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 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인 공동주택	70		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단독주택 및 세대당 전용면 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공 동주택	60
용도별 구분	주 거 용	비 고												
특례건축 물	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및 세대당 전용면 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 주택	복합건축 물은 비 주거용건 폐율(60 퍼센트) 적용 80												
특례제한 건축물	연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 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및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 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인 공동주택	70												
	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단독주택 및 세대당 전용면 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공 동주택	60												
별지 서식을 삭제한다.														
부 칙														
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 · 제8조 · 제8조의2 · 제10조 · 제11조 · 제14조제2항 · 제17조 · 제18조(별표) · 제19조 · 제21조 · 제21조의2 · 제25조 및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· 신고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</p>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길음택지조성비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길음택지조성비분담금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														
부 칙														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원급여 및 대여품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d>의안 번호</td><td>497</td><td>제출년월일 : 1999년 12월 18일 제안자 : 교통위원회 위원장</td></tr> </table>			의안 번호	497	제출년월일 : 1999년 12월 18일 제안자 : 교통위원회 위원장									
의안 번호	497	제출년월일 : 1999년 12월 18일 제안자 : 교통위원회 위원장												
<p>1.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운영하였던 교통순시원제도의 근거규정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이 1997.12.6.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설익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.</p> <p>2. 참고사항</p> <p>가. 관련법규 :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9조(1997. 12. 6. 삭제)</p> <p>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</p>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교통순시원급여 및 대여품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교통순시원급여 및 대여품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														
부 칙														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													
부국아파트 재건축사업 전면 중단과 공원조성 및 인접도로 확장을 위한 청원 심사보고서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d>의안 번호</td><td>29</td><td>1999. 12. 28 도시관리위원회</td></tr> </table>			의안 번호	29	1999. 12. 28 도시관리위원회									
의안 번호	29	1999. 12. 28 도시관리위원회												
<p>1. 심사경과 ○ 청원일자 및 청원자 : 1999년 12월 22일, 박 병진의 216명</p> <p>○ 소개의원 : 김성환의원(국민회의)</p> <p>○ 회부일자 : 1999년 12월 22일</p> <p>○ 상정일자 - 제17회 정기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(1999년 12월 22일) 의결 · 상정</p> <p>2. 청원요지 ○ 청원인들은 5년이상 방치되어 있던 부국연 립주택을 평소 안타깝게 생각하던 차에 재 건축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세부내역을 확</p>														